

# 보도자료

2026. 10. 1.(목)



## 서울회생법원

담당부서

서울회생법원 공보관실

담당자

공보관

###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관한 실무준칙 개정

#### 1. 실무준칙 제424호[변제계획의 변제기간] 개요
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본문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
-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30세 미만의 청년,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#### 2. 기존 규정 내용

-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함(제2조 제1항)
- 채무자가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△ 65세 이상의 노인, △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△ 30세 미만의 청년, △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, △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, △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(제2조 제2항 각 호)

### 3. 개정 내용(2026. 10. 1. 시행)

- 이번 실무준칙 개정으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취약 채무자로서 채무 총액이 5,000만 원 이하이며, 개인채권자가 없고,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채무 등이 없는 경우에도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

\*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이지만,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로 인정되는 중위소득의 60%보다는 높은 수준이므로,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

※ 별지: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(밑줄 부분은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내용임)

[별지]

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

## 변제계획의 변제기간

### 제1조 (목적)

준칙 제424호는 법 제611조 제5항,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(재민 2004-4) 제8조에서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)

-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.
-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.
  1. 65세 이상의 노인
  2.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3. 30세 미만의 청년
  4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
  5.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
  6.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,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‘전세사기피해자등’으로 결정 받은 자
  7. 다음 각 목의 전부에 해당하는 취약채무자

가.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것

나. 채무 총액이 5,000만 원 이하일 것

다. 개인채권자가 없을 것

라.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가 없을 것(다만, 물품구입에 의한 신용  
카드채무는 제외한다)

- 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,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,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변제기간을 제1, 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[실무준칙 제424호 제·개정이력]

○ 2021. 7. 26. 제정 (2021. 8. 1. 시행)

-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원금을 전부 변제하는 경우,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채무자의 경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준칙 제424호 제정

○ 2023. 9. 1. 개정 (2023. 9. 1. 시행)

-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6호를 신설

○ 2024. 12. 17. 개정 (2024. 12. 18. 시행)

-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4호를 개정

○ 2026. 9. 23. 개정 (2026. 10. 1. 시행)

- 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항 제7호를 신설